

문서번호	경영인력과-1108
등록일자	2021. 3. 4
결재일자	2021. 3. 4
공개여부	비공개 (ㄱ)

국 장	기획조정실장	차 관	장 관	결 재
김정희	김종훈	박영민	김현수	
협조	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강민찬			결재 2021. 03. 4 장관

보고자 : 경영인력과장 원상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· 지원법 시행령 · 시행규칙 제정계획(안)

2021. 2.



농림축산식품부
경영인력과

I

추진배경

- ☐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0.5 제정, '21.5 시행)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필요
 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등의 정의, 후계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, 관련 실태조사 시기·범위,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지원금 환수 규정 등(시행령에 위임)
 -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요건, 절차, 지원요건 및 영농영어정착금 용도 및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등(시행규칙에 위임)

II

제정안 주요내용

재
2021.03. 4

<시행령>

- ☐ 후계농어업인, 청년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인단체 정의(시행령 안 제2~4조)
- ☐ 후계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(시행령 안 제5조)
- ☐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의 주기, 범위 및 방법 등(시행령 안 제6조)
- ☐ 후계농어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필요사항(시행령 안 제7조)
- ☐ 동 법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규정(시행령 안 제8조)

<시행규칙>

- ☐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가정 우대(시행규칙 안 제2조)
- ☐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요건 및 절차, 지원 조건 및 내용(시행규칙 안 제3~4조)
- ☐ 영농영어정착금의 용도, 지원금 수령 의무 사항 및 사후관리 방안(시행규칙 안 제5~6조)

III

시행령 제정안 주요 검토사항

□ 후계농어업인의 정의(시행령 안 제2조)

【 법률 조문 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후계농어업인"이란 농업 또는 어업(양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, 영농·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) 후계농어업인 연령 기준(50세 미만)

◆ (쟁점사항) 현행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기준인 50세 미만 유지
vs 55세로 후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

- 후계농어업인은 향후 농어업을 이끌어갈 미래 농어업경영주를 의미, 농어업인의 은퇴 연령 및 관련 제도를 고려한 기준 설정 필요
- '14년에 후계농업인 선발 연령을 만 45세 미만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기 조정한 바 있어, 추가적인 연령 기준 상향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
 -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'14년 65.4세에서 '19년 68.2세로 2.8세 증가하였는바, 후계농 연령기준을 5세 이상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
- 현행 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 기준과 동일하게 **50세로 규정**하되, 향후 농가 연령구조 변화 추이 지속 모니터링 후 개정 검토

< 참고 : 입법례 및 관련 제도 >

- ▶ 현재 농어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은퇴 연령 기준은 없으나,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규정(농어업인 삶의 질 법)
 - 농어업인의 육체노동이 가능한 적정 연령이 70세임을 규정하였음을 고려 시, 후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은 70세 미만일 필요
- ▶ 현재 '후계농어업경영인'의 연령 기준은 '농어업경영체법'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 - 자금 대출 기한(선정 후 5년 이내) 및 상환 기간(15년, 5년 거치 10년 상환) 고려 시, 선정 이후 자금 완전 상환까지 최대 20여년 소요 가능
 - 따라서 50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 설정하는 경우 은퇴연령(70세) 이후에도 자금 상환이 이루어질 가능성

2) 후계농어업인 영농경력(영농경력 없거나 10년 이내)

- 후계농어업인은 기성농어업인과 달리 새로이 농업에 진입하거나 영농경력이 짧은 농업인 중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할 대상
 - 기존 사업 지침* 고려, 최대 10년 이내의 영농경력 보유 농업인을 기성농업인의 영농을 승계, 경영할 인력으로 분류할 필요
- * 후계농어업경영인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격 및 요건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

【 시행령 제정안 】

제2조(후계농어업인의 요건)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령 : 50세 미만일 것
2. 영농·영어경력 : 영농·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

□ 청년농어업인의 정의

【 법률 조문 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청년농어업인”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,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)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(40세 미만)

◆ (쟁점사항) 현행 청년창업농 선정기준인 40세 미만 유지 vs 45세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*

- *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 연령이 상향되어야 지방으로의 청년농어업인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지자체 의견

- 현재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년을 ‘19세 이상 34세 이하’로 규정 중이나, 개별 법령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
 - 청년기본법의 연령 기준(34세 이하)과 달리 청년상인(전통시장법), 청년창업(중소기업창업지원법)의 기준은 개별법령에서 39세 이하로 규정
- 청년기본법의 규정과 타 법 사례를 고려, 농어업분야의 특성 및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한 연령 기준 설정 필요

- 농림어업종사자의 취업자 평균연령은 45.1세('17, 현대경제연구원)로 전체 취업자(41.1세) 대비 4세 이상 높은 구조적 특성
- 동시에, 기 시행중인 청년농어업인 대상 지원 사업*은 대부분 청년 농업인의 연령을 40세 미만으로 설정
 - *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,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, 농업법인 취업지원, 청년 귀농 장기교육 등
 - ⇒ 타 분야 대비 5세 상향된 청년농어업인 기준(40세 미만) 설정 타당
- 농어업분야 신규 취·창업 인력인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45세로 설정 시, 50세로 설정된 후계농어업인 연령기준과 차별화 부족 우려
 - 동시에,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최근 신청 현황* 고려 시, 현행 연령기준 (40세 미만)에서도 일정 규모의 청년농어업인 유입 추세 유지 예상
 - * 연도별 경쟁률 현황 : ('19) 1.9 : 1 (2,981명 지원 1,600명 선발), ('20) 1.9 : 1 (3,034명 지원 1,600명 선발), ('21) 2.1 (3,511명 지원 1,800명 선발)
-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을 40세 미만으로 설정하여, 젊고 혁신적인 인재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할 필요

< 참고 : 해외의 청년농어업인 기준 >

- ▶ 해외의 청년농업인 기준은 EU(40세 미만), 일본(49세 이하)*, 미국(35세 이하)**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
- * (EU) 프랑스 등 EU 주요국은 40세 미만 농업인대상 청년농 직접지불, 청년창업지원 등 지원, (일본) 49세 이하 농업인 대상 농업인재력강화종합지원사업 추진
- ** 미국은 개념적으로는 청년농(young farmers)의 개념이 있으나, 신규농 지원은 연령이 아닌 영농경력 (10년 이내)을 기준으로 '신규농역량강화프로그램' 운영

2) 청년농어업인의 거주 요건

- 현재 정부정책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지원 중으로, '거주요건'을 제한하면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상황 발생
 - * '후계청년농어업인법' 입안 시에도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당초 법령에 명시되어 있던 '1년 이내 농어촌 입주, 5년 이상 거주 예정'이라는 거주 요건을 제외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
 - 법제처 사전 문의 결과, 법령의 거주요건을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거주요건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을 수 있음
 - * 거주요건을 특정하지 않고 심사요청하되, 본 심사에서 재검토 예정(법제처 담당 사무관)

【 시행령 제정안 】

제3조(청년농어업인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40세 미만일 것을 말한다.

□ **후계농어업단체 정의**(시행령 안 제4조) ※ 유사 입법례 :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【 법률 조문 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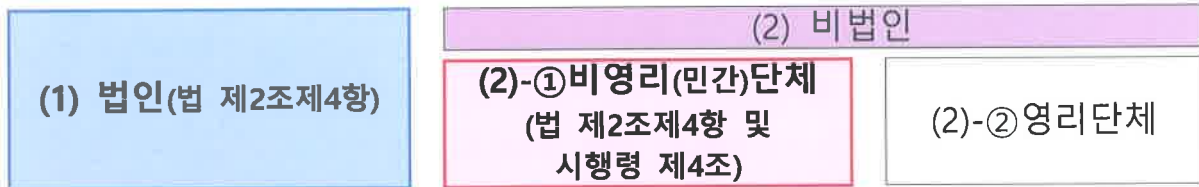
4. “후계농어업인단체”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,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○ 법 본문에서 ‘법인’은 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‘단체’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

*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은 공법인으로서 법인격 보유, 그 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또한 법인격 보유

○ 후계농어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 단체 설립 목적 고려 시, ‘법인이 아닌 단체’ 중 ‘비영리단체’를 지정 대상으로 설정

<참고 : ‘단체’ 구성 형태 >



※ 후계농어업인 단체 = (1) 법인 + (2)-①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성

*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는 여성농어업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, 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’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여성농어업인 단체로 규정

【 시행령 제정안 】

제4조(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) 법 제2조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”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□ **후계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**(시행령 안 제5조)

【 법률 조문 】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
2.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
3.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·문화·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
4.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
5.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○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이전 기본계획 평가는 필수적인 내용으로 타 기본계획(청년정책 기본계획 등)은 법령에 규정

- 본 법에서는 시행령에 이전 기본계획 평가를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항목으로 위임

○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, 의료, 문화·여가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연계지원이 필요

-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별 소관 부처(주거 : 국토교통부, 의료 : 보건복지부, 문화 : 문화체육관광부 등)와의 협력 방안 마련 필요

* 후계농어업인법과 유사 법령간 기본계획 관련 규정 비교

	후계농어업인법 (농식품부)	귀농·귀촌법 (농식품부)	여성농어업인 육성법 (농식품부)	청년기본법 (국조실)
법	▶ 경영역량 강화 교육 ▶ 경영 주거 문화 복지 지원 ▶ 재원 조달 방안	▶ 실태조사 ▶ 교육훈련 전문인력 육성 ▶ 홍보 및 정보화 촉진 ▶ 주거, 생활 및 농어업 경영지원 ▶ 재원 조달방안	▶ 경영능력 향상 ▶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 ▶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	▶ 분야별 주요 시책 ▶ 이전의 기본계획 평가 ▶ 정책 기능 조정 ▶ 재원 조달 방안
시행령	▶ 이전의 기본계획 평가 ▶ 기관 간 교류 및 협력	▶ 희망자 정보 및 상담서비스 ▶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▶ 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▶ 복지증진 ▶ 자녀교육, 의료 교통 등 농어촌 생활에 관한 사항	(별도 위임규정 없음)	▶ 청년정책 관련 경제·사회 환경 변화 ▶ 정책 수립 시 청년 참여 확대 ▶ 청년과 정부 간 소통 활성화 ▶ 지자체간 균형있는 발전 ▶ 청년정책 정보 공유 및 홍보

【 시행령 제정안 】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)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과 같다.

1.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2.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기관 간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(시행령 안 제6조)

【 법률 조문 】

제7조(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·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,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의 기본 인적 사항(성, 연령, 거주지 등)·경영 현황(소득, 영농기반 등)·주거 실태 등으로 함
- 정기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 5년 주기로 실시 예정
 - * 1안)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는 '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(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'후계농어업인 육성 지원(가칭)' 세부 사업 신설 추진 검토
 - * 2안) 5년 주기의 '농림어업총조사' 원자료를 활용한 실태조사 추진 검토

【 시행령 제정안 】

제6조(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의 대상·범위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후계농어업인의 성별, 연령 및 거주지 등 기본 현황
2.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: 5년마다 실시
2. 수시조사: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
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(시행령 안 제7조)

【 법률 조문 】

제14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,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요청의 근거 및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 근거 마련

【 시행령 제정안 】

제7조(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

□ 지원금의 환수(시행령 안 제8조) ※ 유사 입법례 : 귀농어·귀촌법

제16조(지원금의 환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2.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3.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4.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보조금(지원금) 반환 시 고지 절차, 원금 및 이자 환수 및 독촉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규정
- 현재 개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원금 환수 절차의 법적 근거 명확화
 - * 현재 지원금 환수는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 및 '국세징수법' 등에 따라 운영 중

【 시행령 제정안 】

제8조(지원금의 환수 방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지원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의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, 환수 대상 금액,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로 한다.

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.

④ 그 밖에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를 적용한다.

III

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검토사항

□ 후계농어업인등의 선정(시행규칙 안 제2조)

【 법률 조문 】

제8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(專業)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
-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여성농어업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일정 비율(5분의 1)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

* 현재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5분의 10이상 선정하도록 운영 중

【 시행규칙 제정안 】

제2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사항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(이하 "후계농어업경영인등"이라 한다)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5분의1 이상을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□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등 (시행규칙 안 제3~6조)

제8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(專業)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, 지원 조건 및 내용,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,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- 후계농어업인등의 선정요건 등 실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본 조건 규정
 - 전업적 영농 유지 및 기 선정 대상자 등 선정 예외 사유 및 시·도 지사의 선정 권한 등 규정

【 시행규칙 제정안 】

제3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선정요건 등)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요건, 절차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선정요건 : 법 제2조제1호의 “후계농어업인”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, 다음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 가.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. 다만,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수산물을 생산, 판매, 가공하거나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선정 가능
 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 다.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
 라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
 2. 절차 : 시·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“후계농어업경영인 심사위원회”의 심사를 통해 선정
 3. 지원 내용 :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자금, 교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등 (시행규칙 안 제4조)

- 전업적 영농 유지 및 기 선정 대상자 등 선정 예외 사유 및 시·도 지사의 선정 권한 등 규정

【 시행규칙 제정안 】

제4조 (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등)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선정요건 : 법 제2조제1호의 “청년농어업인” 중 독립 영농·영어 기간이 3년 이하인 자 또는 독립 경영 예정이며, 다음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 가.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. 다만,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수산물을 생산, 판매, 가공하거나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선정 가능
 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 다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
 2. 절차 : 시·도지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추천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사업대상자를 평가하고 최종 선정
 3. 지원 내용 :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정착지원금 및 농지, 자금, 기술 등 농림어업 사업 연계 지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☐ 정착지원금의 지원 조건 및 용도 (시행규칙 안 제5조)

- 정착지원금 지급 시 소득 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
-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은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활동을 위해 농어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

【 시행규칙 제정안 】

제5조(정착지원금의 지원 조건 및 용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의 소득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.
②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자는 농어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 등으로만 정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정착지원금 지원 조건 및 사용 가능 업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☐ 정착지원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등 (시행규칙 안 제6조)

-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금(해수부:청년어촌정착지원금)의 사용 용도,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

【 시행규칙 제정안 】

제6조(정착지원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등) ①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자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·영어에 종사할 것
2. 제1호의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·영어에 종사할 것
3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해 관리·점검하여야 한다.

III

향후 추진계획

- ☐ 관계부처 협의: '21.2월
- ☐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등: '21.2월
- ☐ 입법예고: '21.2~3월
- ☐ 법제처 심사: '21.4월
- ☐ 차관·국무회의: '21.5월

[붙임]

시행령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신 설>	제2조(후계농어업인의 요건)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연령 : 50세 미만일 것 2. 영농·영어경력 : 영농·영어로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
<신 설>	제3조(청년농어업인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40세 미만일 것을 말한다.
<신 설>	제4조(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) 법 제2조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”란 「비영리민간단

<신 설>

<신 설>

체 지원법, 제4조에 따라 등록
된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법 제6조제
2항제5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과 같다.

1.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
관한 사항
2.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기관
간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
인육성에 필요하다고 관인정하는
사항

제6조(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의 대
상·범위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
따른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
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
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포함되어야 한다.

1. 후계농어업인의 성별, 연령 및
거주지 등 기본 현황
2.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등 경
영활동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
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
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

<신 설>

<신 설>

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: 5년마다 실시
2. 수시조사: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-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7조(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 등)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

제8조(지원금의 환수 방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지원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의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, 환수 대상 금액, 납부 기한 및 납부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
지원받은 원금 및 이로 인해 발
생한 이자로 한다.

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
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
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
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
해야 한다.

④ 그 밖에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
한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
법률」 제31조 또는 「지방자치
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제31조를 적용한다.

제9조(권한 위임의 범위) 법 제18
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
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
호의 업무 일부를 특별시장·광
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
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
2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
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임할 필
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시행규칙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신설>	제2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사항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^{03.} 안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(이하 "후계농어업경영인등"이라 한다)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5분의1 이상을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<신설>	제3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요건 등)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

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요건, 절차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선정요건 : 법 제2조제1호의 “후계 농어업인”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, 다음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
가.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. 다만,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수산물을 생산, 판매, 가공하거나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선정 가능

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
다.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
라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

2. 절차 : 시·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“후계농어업경영인 심사위원회”

<신 설>

의 심사를 통해 선정

3. 지원 내용 :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자금, 교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 (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등)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선정요건 : 법 제2조제1호의 “청년농어업인” 중 독립 영농·영어 기간이 3년 이하인 자 또는 독립경영 예정이며, 다음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
가.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. 다만,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수산물을 생산, 판매, 가공하거나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선정 가능

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
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
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
자

다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
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
외사유에 해당하는 자

2. 절차 : 시·도지사는 평가위원회를
구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추천
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
사업대상자를 평가하고 최종 선정

3. 지원 내용 : 청년창업형 후계농어
업경영인의 정착지원금 및 농지,
자금, 기술 등 농림어업사업 연계
지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
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
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
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
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
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
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
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정착지원금의 지원 조건 및 용
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해양수산부장관은 정착지원금 지급
대상의 소득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

<신 설>

<신 설>

원할 수 있다.

②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자는 농어
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 등으로
만 정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정착지
원금 지원 조건 및 사용 가능 업종
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
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(정착지원금 수령자의 의무사항
등) ①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자
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 지급 기
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의무적으
로 영농·영어에 종사할 것

2. 제1호의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
농·영어에 종사할 것

3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
산부장관이 정하는 의무교육 과정
을 이수할 것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
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은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금의 적
정 사용여부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
등에 대해 관리·점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